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 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정책보험국장 최윤배(6530)/ 보험팀장 김기성(6571)/ 담당 김윤아(6581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5-898호

시행일자 2015. 10. 30.

수 신 각 시·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**암환자에게 처방.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(제2015-255호) 안내**

1. 관련 근거 : 가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3937호(2015.10.28.)
나.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-255호(2015.10.28.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,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 개정 사항 -

○ 신설 : 2항목
- 갑상선암에 'vandetanib' 단독요법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 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- 전립선암에 'degarelix' 단독요법(1차, 고식적요법)
  ·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
○ 변경 : 1항목
- 항구토제 투여기준 1. intravenous chemotherapy 주2. 사항 중

‘palonosetron(품명: 알록시주)’ 급여 인정 기준 변경
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정보-약제정보-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'란에도 게재됨

붙 임 : 1. 주요공고개정내역
2. 공고전문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